

## 항 소 이 유 보 충 서(2)

사 건 2017노3965 사기

피 고 인 조 영 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본 항소이유보충서(2)의 제출 목적

본 항소이유보충서(2)의 제출 목적은 국내외 권위 있는 미술 전문가, 학자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변호인의 2018. 3. 22.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했던 주장의 근거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 2. 국내 유력 미술평론가인 오광수는 ‘현대미술에서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행위는 큰 의미가 없다. 창작성을 가진 사람이 작가이지 실제 작품 제작을 한 사람이 작가는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술평론가이자 ‘뮤지엄 산’의 관장인 오광수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환기미술관 관장,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미술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입니다.

오광수는 “일상적인 사물을 창작의 모티브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된 팝아트(POP ART)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지금까지는 화가가 일일이 화면에 그리는 것으로 창작이라 했습니다만, 화투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은 화투를 발견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구성적인 수순으로 새롭게 화면에 구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창작의 패턴은 발견, 선택, 재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략) 문제가 된 조수와의 관계에 있어 협업이란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엄격히 말한다면 조영남씨의 화투 그림인 경우 그것은 단순한 기능상의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지 그것이 창작을 같이 한다는 의미의 협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대 작가들 가운데는 조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 조수들도 자신이 창작자의 창작을 하는 것인지 조수들도 자신이 창작자와 창작을 공유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보조하는 것인지 창조적 메스가 가해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증 제25호 오광수 진술서).

이러한 오광수의 견해는, “팝아트 등의 현대미술에서는 ‘아이디어’ 를 중시할 뿐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행위는 큰 의미가 없다.1) 창작성을 가진 사람이 작가이지 실제 작품 제작을 한 사람이 작가는 아니다.2)” 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 3. 미국의 유력 미술잡지 ‘아트 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 편집장 리처드 바인(Richard Vine) 역시 ‘오늘날 국제적인 미술 현장에서 조수를 두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다. 딜러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한, 관례적으로 조수 사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변호인의 2018. 3. 22.자 항소이유보충서 49~52면.

2) 변호인의 2018. 3. 22.자 항소이유보충서 75~76면.

리처드 바인(Richard Vine)은 미국의 유명 미술잡지 ‘아트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의 편집장으로서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중 제26호 리처드 바인 경력). 또한 대한민국에서 다음과 같은 강연 및 발표를 한 경력도 다수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미술계에도 꽤 알려져 있습니다.

- ▶ 2010. 10. 10. 포항시립미술관 ‘리처드 바인과 함께하는 세미나’ 개최
- ▶ 2012. 5. 11. 국립현대미술관 ‘단색화의 문화적 전략’ 주제로 발표
- ▶ 2012. 12. 28. 광주시립미술관 ‘아시아 현대미술의 돌파구’ 특강
- ▶ 2014. 9. 23. 대구미술관 ‘왜 현대미술은 그렇게 기괴할까?’ ‘한국, 아시아 현대 미술의 현재와 미래’ 초청 강연
- ▶ 2014. 9. 26.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60주년 국제포럼 ‘다문화세계에서의 예술’ 주제로 발표 등

리처드 바인은 “오늘날 국제적인 예술 현장에서, 예술가가 상상하고 감독하며 마침내 서명과 함께 승인하게 되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화가가 조수(보조원)를 고용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있고 매우 일반적입니다. (중략) 조수는 일단 계약된 작업이 완료되면 시장에서의 작품의 후속 성과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재정적 이익 또는 손실에 있어서 지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중략) 요즘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화가의 개념적 독창성과 관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조수의 역할에 대해 그들 자신을 면밀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조수의 사용은 오늘날 매우 광범위하고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딜러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한, 관례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중 제27호 인증서(리처드 바인 진술서)].

이러한 리처드 바인의 견해는 “팝아트 등의 현대미술에서는 ‘아이디어’ 를 중시

할 뿐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행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수에게 일부 작업을 시키는 것은 널리 허용된 관행이다.<sup>3)</sup> 조수나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은 작가들이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sup>4)</sup>” 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4. 오경미는 2018 미술사학대회에서 작품이 조영남에게 귀속된다면 조영남은 사기혐의를 벗을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조영남은 사기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고인을 저작권범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안 된다는 유력한 자료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합니다.**

지난 번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저작권범위반죄 성립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피고인을 저작권범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안 된다는 유력한 자료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같은 취지의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2018. 6. 9. 서양미술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공동 주최한 2018 미술사학대회에서 오경미는 ‘되돌아보는 조영남 대작 사건 : 개념 미술의 오역과 통속화’라는 발표문에서 “논쟁의 쟁점은 조영남의 작품이 조영남에게 귀속될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작품이 조영남에게 귀속된다면 조영남은 사기혐의를 벗을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조영남은 사기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중 제28호 : 오경미의 발표문).<sup>5)</sup> 오경미의 발표문 중에는 수긍할 수 없는 내용도 있지만 위 주장은 타당합니다.

3) 변호인의 2018. 3. 22.자 항소이유보충서 49~52면.  
 4) 변호인의 2018. 3. 22.자 항소이유보충서 60~63면.  
 5) 오경미, “되돌아보는 조영남 대작 사건 : 개념미술의 오역과 통속화”, 『위작, 대작, 방작, 협업 논쟁과 작가의 바른 이름』, 70면.

**입 증 방 법**

- 1. 증 제25호      오광수 진술서
- 1. 증 제26호      리차드 바인 경력
- 1. 증 제27호      인증서(리차드 바인 진술서)
- 1. 증 제8호        오경미 발표문( ‘되돌아보는 조영남 대작 사건 : 개념 미술의 오  
                          역과 통속화’)

2018. 6. .

피고인 조영남의 변호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구 본 진

담당변호사    이 종 근

담당변호사    최 중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 귀중**